터키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터키 공화국(Republic of Turkey) 2. 수도 : 앙카라(Ankara, 527만명) 3. 인구・면적 : 8,161만명(2016.7.), 780,580㎢(한반도의 약 3.5배) 4. 공용어 : 터키어(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계) 5. 1인당 GDP : 10,807불(2016년) 6. 독립일 : 1923. 10. 29.(터키 공화국 선포일, 오스만제국 계승)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단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2. 연혁

○ 1962. 1961년 헌법 개정과 1962년 헌법재판소조직과 소송법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설립

- 독일 및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제도 수용

○ 1982.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 일부 수정되었지만 큰 변화 없이 현상 유지

○ 2010.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수 및 선출절차 등 변경, 헌법소원제도 도입

○ 2017.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

3. 구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President) 및 부소장(Deputy President)

2인을 포함한 1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재판관 중 3인은 국가회계법원과 변호사협회의 대표들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국회가 임명.

나머지 14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짐. 파기법원에서 3인, Council of State에서 2인, 최고군사법원에서 1인, 고등군사행정법원에서 1인을 임명하는데, 해당법원의 재판부전원회의에서 3배수로 지명된 법관 중에서 임명. 또한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고등교육위원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3인을 임용.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고위공무원, 판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

○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재임 및 겸임 불가. 정년은 65세

○ 헌법재판소장 및 2명의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4년의 임기로(재선 가능) 재판관 전원에 의한 다수결로 선출

○ 재판관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만 45세 이상의 자

- 정교수 혹은 부교수
-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2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고위공무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
-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법관과 검찰

4. 권한

○ 규범통제

① 추상적 규범통제

-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 국회의사규칙의 형식 및 내용의 위헌여부심판(법률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은 법안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에 대한 심판으로 한정)

- 헌법개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여부심판(내용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하고 필요한 제안·표결·논의절차의 위헌여부만을 심판)하고, 형식상 하자를 근거로 헌법 개정을 무효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
- 형식상 하자에 대한 법률심판은 대통령 혹은 국회의 5분의 1 이상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 국가긴급사태, 계엄령 혹은 전시 중에 발효된 법률의 효를 갖는 명령에 대한 위헌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오직 헌법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 가능
- 국제조약은 규범통제의 대상에서 제외

② 구체적 규범통제

-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거나 일방당사자의 위헌 주장이 상당한 경우 위헌법령심판을 제청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 또는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대통령, 각료,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각 고등법원의 법원장 및 법관, 검사장 및 검사장보, 검사, 감사법원, 터키 국군 총 사령관, 육해군 총 사령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

○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의 재정에 대한 감사

○ 헌법이나 국회의사규칙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박탈 및 제명결정. 이 심판요청은 국회의 결정이 난 후 1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에는 두 개의 재판부(section)가 있고 필요한 경우 최소 12명의 재판관과 소장, 소장이 없을 경우 소장이 임명한 부소장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 결정은 다수결이 원칙이나, 헌법개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경우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결정

○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할 경우 입법작용을 하거나 법령에 대하여 추완하는 내용의 변형결정은 할 수 없음

6. 결정의 효력

○ 법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국회의사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다만, 필요한 경우 관보공고일로부터 1년을 지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상실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음.

○ 헌법재판소 판결은 최종적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

7. 기타사항

○ 보고서 작성과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여 충분한 수의 연구관(Rapporteur Judge)과 연구관보(Assistant Rapporteur Judge)를 둠.

- 연구관은 적어도 5년 경력이 있는 교수, 판사, 감사관 등으로 이루어짐.

8. 연락처

○ 주　　소 : Ahlatlıbel Mahallesi İncek Şehit Savcı Mehmet Selim Kiraz Bulvarı No : 4
06805 Çankaya / ANKARA /
Turkey

○ 전화번호 : +90 312 440 35 35

○ 팩스번호 : +90 312 439 59 24

○ 홈페이지 : http://constitutionalcourt.gov.tr

※출처: 세계은행 웹사이트
터키 헌법
베니스위원회 CODICES
(2017. 6. 작성)